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21

제출연월일 : 2009. 9. 30.

발 의 자 : 박성민 의원 외 3명

1. 제정 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응급의료 지원내용(안 제3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안 제4조)

-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설치 권장 시설 :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업무시설·공연장·대규모점포·예식장·실내체육관, 학원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 미터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재정적 지원(안 제5조)

- 응급처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제4조제1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 설치 및 권장(안 제6조)

-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 응급처치 교육(안 제8조)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
 - 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라.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재정적 지원) ①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21)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30(수)

나. 제출자 : 박성민 의원 외 3명

다. 위원회 회부 : 2009. 10. 6(화)

라. 위원회 상정 : 2009. 10. 12(월)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박성민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응급의료 지원내용(안 제3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안 제4조)

-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설치 권장 시설 :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업무시설·공연장·대규모점포·예식장·실내체육관, 학원**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 미터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 천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재정적 지원(안 제5조)

- 응급처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제4조제1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 설치 및 권장(안 제6조)

-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 응급처치 교육(안 제8조)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5.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의2,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 공중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노인복지법 제3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6. 담당부서 의견(보건소)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임 없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고가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시 구 재정에 부담이 됨.
- 환자 사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으나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어 활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됨.
- 응급의료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1호, 2호 라.의 내용 중 일부 수정이 바람직할 것임(다중집합장소 ⇒다중이용시설)

7.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노원구, 서울송파구, 대전서구

8.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홍성춘)

- 본 조례안은
 -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규칙까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같은법 제47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 제4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시설 대상을 규정하고

- 제5조는 재정적 지원내용으로써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6조는 설치 및 권장에 대한 내용, 제7조는 장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끝으로

- 응급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음.

- 이를위해 유사시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특히, 이 조례에 의하여 한 명의 생명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구민의 귀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